

February 25, 2020

Legal Update

2020 개정 저작권법 주요내용

1. 개정 저작권법(법률 제16933호, 2020. 2. 4. 공포, 2020. 8. 5. 시행)의 주요내용

- 가. 수사 목적의 저작물 복제를 허용하고, 교과용도서에서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, 배포, 공중송신하고 시험문제를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(제23조, 제25조제2항, 제32조).
- 나.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(제30조).
- 다. 저작권 등록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등록된 저작권을 변경·경정·말소등록하거나 말소된 등록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, 권원 없이 등록된 저작권에 대한 직권말소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(제55조, 제55조의3, 제55조의4 등).
- 라.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를 추가하고,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/변경신고의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(제105조제3~12항).
- 마.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회계부정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해당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제108조의2).

바.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,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부가 제시한 조정안을 어느 한쪽 당사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및 분쟁조정 예정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제112조제1항, 제117조제2~5항 등).

2. 개정이유

- 가. (제23조, 제25조제2항, 제32조) 수사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, 학교에서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- 나. (제30조)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저작물 이용환경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.
- 다. (제55조, 제55조의3, 제55조의4 등) 저작권 등록 신청자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,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며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.
- 라. (제105조제3~12항) 횡령·배임죄나 그 밖에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결격사유로 추가하고, 신고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것입니다.
- 마. (제108조의2)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경영상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.
- 바. (제112조제1항, 제117조제2~5항 등)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.

3. 앞으로의 전망

- 가. (제23조, 제25조제2항, 제32조)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지고, 온라인평가 방법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나. (제30조)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예외에 포함되는 복제기기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령에 위임함에 따라 복제기기의 범위가 명확히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다. (제55조, 제55조의3, 제55조의4 등) 저작권 등록 관련자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, 권리구제가 용이해지며, 저작권 등록제도의 악용여지가 최소화되고, 저작권 귀속 혼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- 라. (제105조제3~12항) 저작자의 권리를 위탁받아 저작권료 수수 및 분배를 주 업무로 하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도덕성 및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, 기존의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에 비해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마. (제108조의2)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대표 등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신설하고, 이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으로 업무정지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처리 및 철저한 관리·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바. (제112조제1항, 제117조제2~5항 등) 현행 조정제도는 당사자 일방의 협력 없이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 이외의 해결책이 부재한 실정인데, 직권조정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및 합의금 중용이 남발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.

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
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Contacts



임상혁
파트너변호사

☎ 02-316-4055

✉ shim@shinkim.com



문진구
파트너변호사

☎ 02-316-1653

✉ jgmoon@shinkim.com



주석호
소속변호사

☎ 02-316-1759

✉ shjoo@shinkim.com

SHIN & KIM

법무법인(유)세종

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
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.

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& Kim'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
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.